



보도자료

| | | | |
|------|---|------|--|
| 보도일시 | 2008.9.9(화) 조간 | | |
| 배포일시 | 2008. 9. 8(월) 10:00 | 담당부서 | 국고국 국고과, 회계제도과 결산과 |
| 담당과장 | 남 봉 현 (2150-5110) 서 철 환 (2150-5120) 권 광 호 (2150-5230) | 담당자 | 노 중현 사무관 (2150-5111) 박 은미 사무관 (2150-5215) 유 방종 사무관 (2150-5231) |

제목 : 발생주의 ·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회계관련 법률 개정

- '07.10월 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'09.1.1일부터 정부에 발생주의 ·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될 예정
 -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중복 · 분산되어 있는 결산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
 -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
 - '08.9.9(화)일부터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(입법예고기간 9.9~9.28일)하였으며
 -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·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
- ※ 별첨 : 국가회계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
국가회계관련 법률 개정방안

2008. 9.

기 획 재 정 부
국 고 국

순 **서**

I.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1 ~ 2

- 1. 결산관련 법 체계 정비
- 2. 중복규정 삭제·정리
- 3. 기타 용어 및 자구 정리

II. 국가회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3 ~ 9

- 1. 결산보고서 구성 체계화 및 결산절차 규정 등 정비
- 2. 발생주의 회계의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
- 3. 기타 용어 및 자구 정리
- 4. 결산보고서 등의 시행 및 적용시기

〈참고자료〉

- 1.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경과
- 2.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 도입시 기대효과
- 3. 외국의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 도입사례

◇ 요 약 ◇

【추진배경】

- '07.10월 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'09.1.1일부터 정부에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
 -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중복·분산되어 있는 결산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
 - ⇒ 지난해 국가회계법 통과시 국회에서 관련 법령간 중복 및 상충문제를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

【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 주요내용】

- ①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 결산관련 법률체계 정비
 - 국가재정법은 결산원칙, 결산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
 -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구성,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

② 통합결산체계 구축 및 결산보고서 통합·체계화

- 각 중앙관서 회계별 결산, 기금별 결산을 별도로 작성하던 것을 중앙관서별로 회계,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 작성
- 복잡·다양한 결산서류를 하나의 결산보고서로 통합

| 현 행 | 개 편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결산보고서(재정법 §58) ▪ 기금결산(재정법 §73) ▪ 성인지 결산서(재정법 §56) ▪ 성과보고서(재정법 §8) ▪ 재무보고서(회계법 §1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결산보고서(회계법 §1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산개요 - 세입세출결산 (기금은 수입지출결산) - 재무제표(재정상태표, 재정운영표, 순자산변동표) - 성과보고서 |

- ③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'09년 결산부터 작성하되, 국회에는 '11년 결산부터 제출

【추진일정】 10월 중 차관회의·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제출

I.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

1. 결산관련 법 체계 정비

①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성격 명확화(§58, §59)

- 결산보고서 작성·제출절차 및 일정은 재정법에 존치하여 국가재정법의 재정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 유지
 - * 부처별 결산보고서 → 정부결산 → 감사원 검사 → 국회제출
 (2월말) (4.10일) (5.20일) (5.31일)

- 결산보고서의 구성·내용, 작성절차·방법은 회계법에 이관하여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

② 중앙관서별 통합결산체계 구축(§73)

- 현재 각 중앙관서 회계별 결산, 기금별 결산을 각각 별도 작성하여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
- 중앙관서별로 소관 회계, 기금에 대한 통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체계로 전환하고
 - 기금결산절차를 통합결산보고서 작성·제출절차에 통합
 - * 통합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법에서 규정

③ 재정정보화 추진근거 규정 신설(§97의2)

- 회계법의 회계 정보화 추진근거 규정(회계법 §9)을 재정법으로 이관, 정보화대상을 재정전반으로 확대

2. 중복규정 삭제·정리

① 기금의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규정(\$62②)

- 현재 재정법은 기업예산회계법에 따라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, 회계법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
- 기금의 회계처리도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정법 규정을 삭제

② 성과보고서 제출절차 규정(\$8③·④)

- 현재 결산보고서 제출절차와 별도로 성과보고서 제출절차를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을
-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통합하고, 결산보고서 제출절차와 중복되는 성과보고서 제출절차를 삭제

3. 기타 용어 및 자구정리

□ 새로운 회계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용어 등을 정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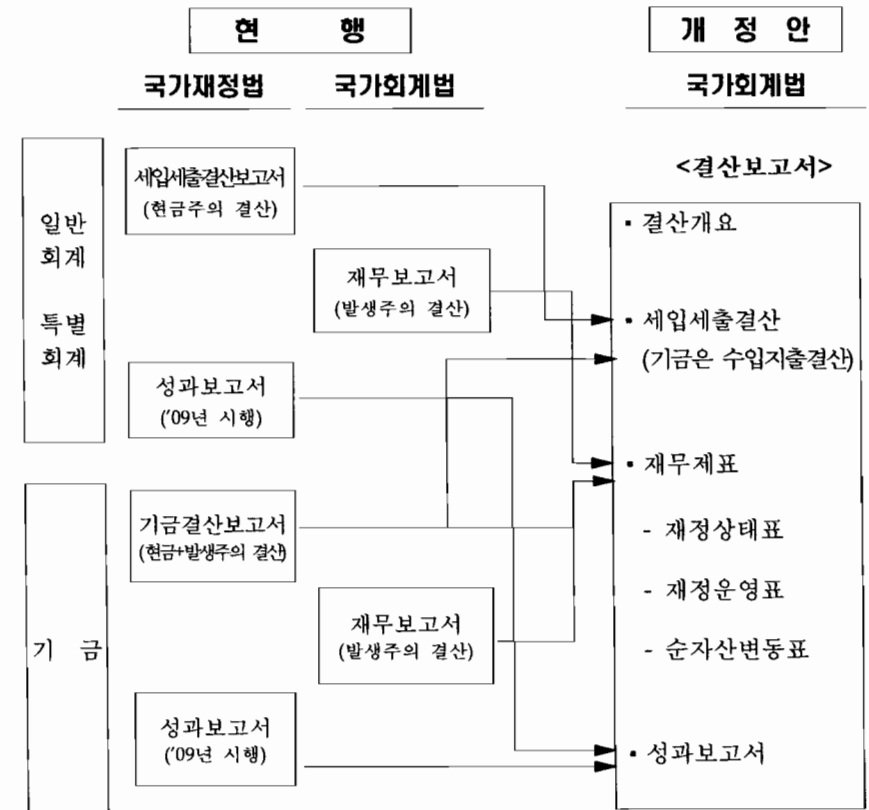
- 정부결산 → 국가결산보고서(\$60, \$61)
- 추정대차대조표 → 추정재정상태표
추정손익계산서 → 추정재정운영표(\$71.2호)

II. 국가회계법 개정안 주요내용

1. 결산보고서 구성 체계화 및 결산절차 규정 등 정비

① 결산보고서 통합·체계화(\$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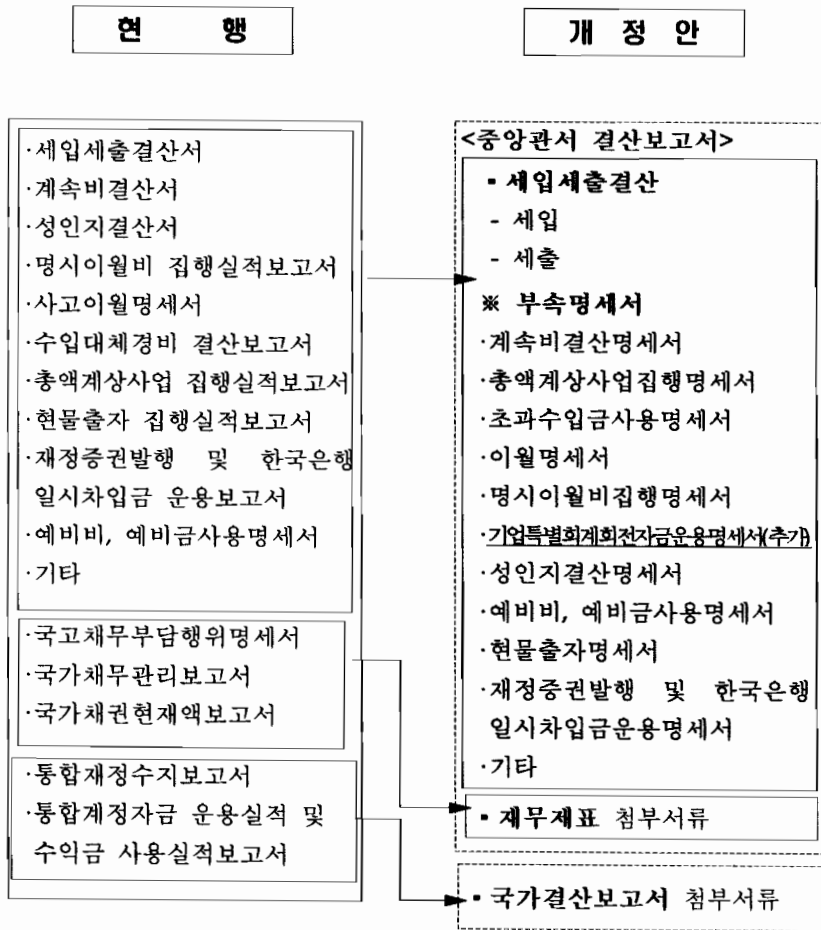
- 재정법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, 성과보고서, 기금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의 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재구성



②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정비(\$15의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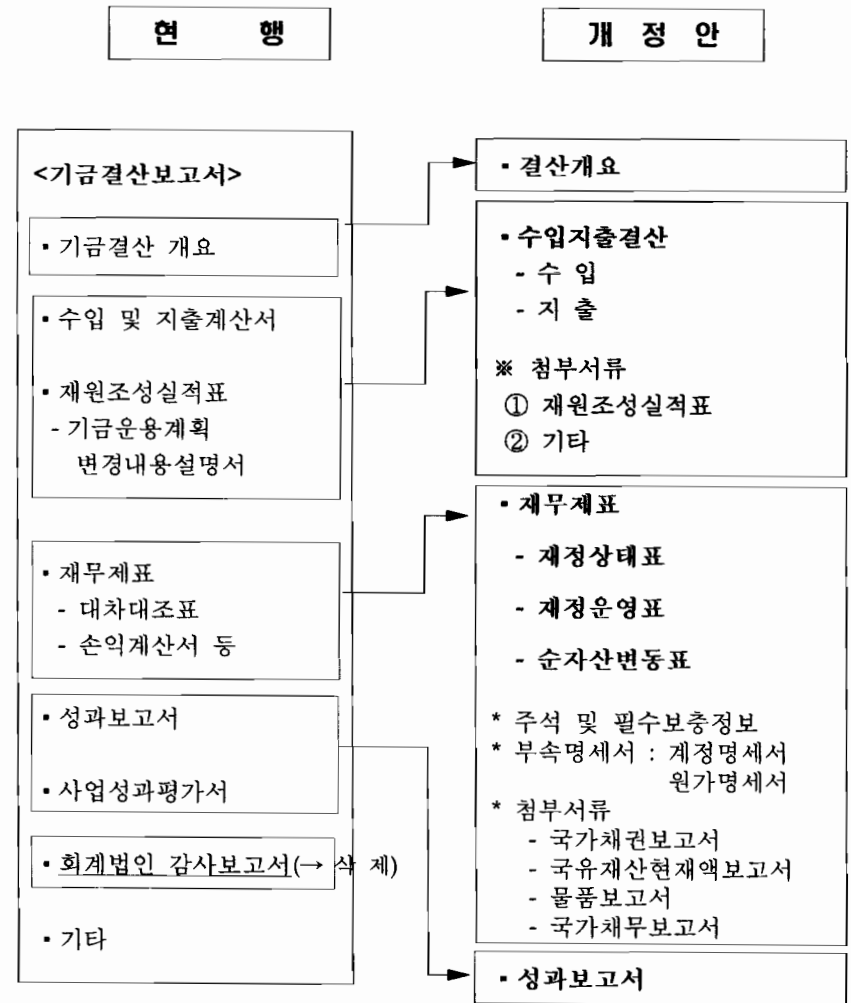
○ 일반·특별회계 : 세입세출결산

- 기존 세입세출결산 관련 서류를 결산서별(세입세출결산, 재무제표 등) 첨부서류로 재구성



○ 기금 : 수입지출결산

- 현행 기금결산보고서는 보고서작성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지출결산과 재무제표로 정리



③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규정(\$15)

- 결산보고서 각 구성서류별 작성방법을 통합하여 규정

| 구성서류 | 작성방법 |
|--|--|
| · 결산개요 | · 결산 내용을 요약 정리 (현행 \$15를 일부 수정) |
| · 세입세출결산 (기금은 수입지출결산) | · 세입세출예산,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(현행 재정법 \$58③을 이관) |
| · 재무제표 - 재정상태표 - 재정운영표 - 순자산변동표 | ·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(현행 회계법 \$16조를 이관) |
| · 성과보고서 | ·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|

④ 중앙관서 단위로 통합 결산보고서 작성체계 구축(\$13)

- 중앙관서장은 소관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 작성
- 민간관리기금*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중앙관서장에게 2.15일까지 제출
 - *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
(예: 공무원연금기금, 신용보증기금, 수출보험기금 등)

⑤ 기금결산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 첨부제도 폐지

-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¹⁾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제출(재정법 \$73①)
- 기금결산에 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의 고유권한인 회계 감사와 중복(예산낭비²⁾될 뿐만 아니라, 기금결산일정이 단축(2월말→2.15일)된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

2.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의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

① 국가회계법과 개별법간 적용순위 명확화(\$10)

- 회계 및 결산에 관해서는 회계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회계법을 통일적으로 적용
 - ※ 각 개별법률을 검토하여 국가회계법 우선 적용시 문제가 있는 규정들은 별도 정비 추진

② 국가회계기준 제정근거 정비(\$11①)

- 회계기준의 전문기술적 성격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령(시행규칙)으로 제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
 -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

1)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 자산규모 3,000억원 이상인 기금 (재정법시행령 \$ 31)으로, 전체 60개 기금 중 24개 기금이 해당

2) 기금별 외부감사비용 : 기금에 따라 1,000만원 ~ 9,000만원 소요

- (사례) 국민연금기금 : 4,500만원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: 2,800만원, 수산발전기금 : 1,100만원, 수출보험기금 : 8,000만원(세무조정 포함), 대외경제협력기금 : 1,800만원, 신용보증기금 : 8,900만원

3. 기타 용어 및 자구정리

① 결산지침 및 자료제출요구 근거 마련(§26②·③)

- 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결산지침 작성·통보 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 규정을 회계법으로 이관

② 국가재정법 이관 및 중복규정 정비

- 회계업무 정보화 추진근거 규정(§9)을 재정법으로 이관
- 재정법과 중복되는 국가재무보고서 등의 공표 규정(§22) 삭제

③ 재무회계 원칙(§12) 삭제

- 국가회계는 재무회계(발생주의 회계)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
 -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관한 동 규정을 국가회계기준 제정 근거 규정(§11)에 통합하여 규정

④ 위원회 정비(§23)

- 각 부처에 설치하는 회계결산심의회*는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(5.27일 국무회의 보고)에 따라 폐지
 - * 중앙관서의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자문기구
 - 필요시 각 부처별로 자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

4. 결산보고서 등의 시행 및 적용시기(재정법·회계법 부칙)

-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'09년 결산부터 작성하되, 국회에는 '11년 결산부터 제출

- 국가회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*(공동위원장 : 홍익대 김경호 교수, 배국환 제2차관)에서

- * 민간 회계전문가, 감사원 등의 관계부처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,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

- 최초로 작성되는 국가 재무제표인 점을 감안, 신뢰성을 갖춘 재무제표를 공표하기 위하여 2년간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기로 결정

- ① 새로 도입되는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의 방대한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분개, 일반·특별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 제거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

- 결산보고서 작성과정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프로그램 오류가 있더라도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음

- 실제로 회계처리하고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아야 신뢰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가능

- ② 발표된 재무제표에 사소한 오류라도 발생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

- ③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미국, 영국, 호주, 뉴질랜드 경우에도 발생주의 회계 도입후 3~7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행한 바 있음

참고1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경과

- '07.10.17일, 국가회계법 제정·공포
 - '09.1.1일부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
- '07.10.24일, 국가회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 구성
 -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준비작업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회계전문가로 실무위원회³⁾를 구성 (국가회계법 부칙 §2)
 - 실무위원회의 지원, 유관기관 의견수렴, 용역사업 관리 등을 위해 실무작업반⁴⁾을 구성
- '08.2.25일, 외부전문기관(삼일·삼정·윌촌 컨소시엄)에 용역 발주
 -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마련 등 실무위원회의 후속업무를 지원
 - 법령정비, 회계제도개선 등 6개 분야로 나눠 개선사항 발굴 및 대안 마련 등 과업을 수행
- '08.2월 ~ 현재, 실무위원회 및 용역수행 등을 통해 후속 작업 추진 중
 - 국가회계법 등 법률개정안, 국가회계기준 제정안 마련
 -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세부실행방안 검토 중

3) 공동위원장 : 재정부 제2차관 및 민간위원 1인
위원 : 감사원, 행안부 등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8인

4) 75개 기관(정부기관 및 기금)의 과장급으로 구성(반장 : 회계제도과장)

참고2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 도입시 기대효과

- 현재의 현금주의·단식부기 회계제도로는 국가 재정상태 및 일정기간의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
 -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현금출납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·부채의 변동이나 수입·비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며
 - 단식부기 방식은 세입세출과 자산·부채간 상호 연계되지 않고 개별관리되어 국가재정의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곤란
- 앞으로 정부부문에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
 - 국가의 자산·부채가 종합·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됨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
 - 복식부기의 자체 오류검증기능을 통해 정확한 관리가 가능
 - 현재 단순히 사업별 지출내역만 제공되는 세입세출결산에 사업별 투입원가정보까지 생산되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함

■ 각 회계제도의 비교

①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

| 구분 | 단식부기 | 복식부기 |
|------|---|---|
| 기록방식 | 수입·지출사실 만을 기록 (금전출납부식) | 수입·지출을 자산·부채와 연계하여 기록 |
| 비교 | · 자산·부채는 별도로 비망 기록 · 산출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가능성 (수입·지출내역이 자산· 부채의 증감과 미연계) | · 자산·부채 변동을 동시에 기록 ·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거래누락 시 자동 파악 (수입·지출내역이 자산· 부채의 증감과 연계) |

② 거래를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

| 구분 | 현금주의 | 발생주의 |
|------|--|--|
| 기록시점 | 현금출납시점 | 거래발생시점 |
| 비교 | · 현금출납이 있어야 기록 · 취득 당시 가치로 기록 후 금액 불변 (예1) 감가상각 인식 안함 (예2)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 계속 반영 (예3) 공사비 지출이 매년 발생해도 건물완공 시점에 자산인식 | · 현금출납이 없더라도 거래 발생시 기록 · 실제 회수·지급할 금액 으로 자산·부채 표시 (예1) 사용에 따른 자산의 가치하락을 인식 (예2) 채권의 회수가능 정보를 장부에 반영 (예3) 공사비 지출과 비례 하여 기간별로 자산을 인식 |

참고3 외국의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 도입사례

□ 도입계기

- '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재정적자 누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발생주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
- 복식부기·발생주의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뉴질랜드와 영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

□ 주요 국가별 도입현황

- OECD국가 중 미국·영국·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(8개국)하였으며, 기타 국가들도 도입을 추진

- 발생주의 회계 도입국가 :

- 뉴질랜드('92년), 아이슬란드('92년), 스웨덴('94년)
- 호주('95), 미국('98년), 핀란드('98년)
- 영국('00), 캐나다('02년)